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과 개선

-집행기관의 정책집행 영향요인 중심으로-



전 운 기

노동부 국장(중앙교육원 교육파견)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압축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점차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며, 민간부문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새로운 국가발전의 도약을 위한 국정운영방향으로 '시장 기능의 강조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책이념을 내세우며, '시장기능강화, 각종 규제의 완화, 경쟁원리의 도입,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 방침'을 공공, 금융, 기업, 노동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추진

하여왔다.

이는 '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보건의 선임면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과 전면적인 외부위탁가능,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 면제, 프레스 및 리프트의 정기검사 면제" 등 주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완화가 계속되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이 강조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가 이뤄진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현상은 재해율이 1990년대에 들어와 줄곧 하락하다가 1998년도에 0.68%의 최저를 기록한 후, 2001년에는 0.77%까지 높아지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두번째 현상은 산업안전보건의 규제 완화 조치로 경비절감 및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안전보건전문가들을 우선해고·축소하고, 임시직·계약직형태의 고용전환 현상과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 현상은 현장 구조조정의 여파로 전담 관리자 대신 임시·일용·계약·파견직 형태의 고용형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부정적인 현상을 볼때 과연 산업안전보건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정책집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감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의 정책목적을 달성해야 할 노동정책 당국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의 틀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발생 추이와 경제적 손실 규모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산업재해통계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을 계기로 1964년부터 집계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37년간에 걸쳐 발생한 총 재해자수는 3,243,036명이다. 이 중에 사망자는 54,023명, 부상 또는 질병자는 3,189,013명에 달하고, 지난 10년간(1991~2000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 등에게 지급한 산업보상금은 총 11조 7,306억원으로 연평균 1조 1,730억원의 엄청난 금액이다. 1991년에 지급된 총 산재보상금은 7,015억원이며, 그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97년에는 1조 5,56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1998년과 1999년에는 연이어 산재보상금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재해자수가 늘어나며 산재보상금도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액을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인 산재보상금의 4배를 간접손실액으로 계산한 경우, 2000년 한해에 발생한 총경

제적 손실 추정액은 7조 8,133억원으로 1999년 대비 14.29%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00년도 우리나라 GDP의 1.5%에 달하는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 영향요인 실태

연구 분석 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집행기관, 피집행기관, 환경적 요인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인중 집행기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집행기관의 정책집행 영향요인 실태

(1) 집행체제의 구성·운영

우리 나라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은 총 60여개에 이르며, 노동부·건교부·환경부·산업자원부 등 수개부처와 그 산하기관 및 법정 단체에서 석유화학·가스·제조업·건설업 등 산업분야별로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총괄적인 조정기능이 곤란한 실정이며, 안전검사·감독·점검확인·의무고용·의무교육 등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부처가 소관사업의 업무를 각각 수행함에 따라 중복적인 규제와 집행감독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노동부의 집행체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집행기관의 구성체제 문체점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노동관서간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역할 구분이 되고 있으나, 일선집행기관으로서 지방노동청과 소속 지방사무소간의 역할이나 기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

하면 지방노동청장에게 지방사무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제·지도·조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인력과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과장을 서기관으로 보하고, 지방사무소 산업안전과장을 사무관급으로 포함으로써 직급상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이들간의 권한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지방노동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이 실제로 없는 실정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비롯해 비영리법인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관련 중간개개집단(Intermediary Group)들이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자체적으로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함은 물론, 수평적 측면에서의 기관과의 역할구분과 상호 협조 및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관내의 수직적 측면에서도 집행과정의 왜곡(Distortion)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그리고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재해예방단체간의 역할분담 체제는 수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법적 강제력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지도·감독 권한이 노동부 지방관서에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지방관서의 집행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에 따라 각종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집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의 지원 참여가 불가피하게 되고, 또한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지원 기능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각각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장으로부터 집행

체제의 혼선과 중복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양기관의 일선 실무자간에는 권한 행사와 관련한 불협화음마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산업안전보건문제에 전문적인 공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내부 전문인력의 분산활동과 그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여러 부문에 걸쳐 분산 집행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독·과점적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의 육성·발전과 저변확대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민간재해예방단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업무영역 과다에 따라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작업환경측정분야에서부터 시작된 영리법인의 시장진입 확대조치로 사업장 유치에 위한 과다경쟁과 서비스 부실의 우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산업재해예방단체 간의 역할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2) 예산

최근 3년간(1998~2000년)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간의 수입에 있어 가장 큰 몫(32.6%)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의해 조달된 것으로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지출예산 총액의 최저출연율인 5%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한 출연금은 전체의 2.6%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정부예산 출연은 연간 산업재해

<표 1> 산업재해예방관련 기관의 기능분담 체계

기관명	기능분담
노동부	-본부 :산재예방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지방관서 :사업장지도 · 감독
한국산업 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홍보 -기술지도원 :사업장의 기술지도 · 지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재예방관련 연구 · 조사 -산업안전교육원 :안전 · 보건 관리자 등 직무교육
민간 전문단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진단 및 안전 관리대행, 자체검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리감독자교육등 -대한산업보건협회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 대 행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안전진단 및 건 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안전관리대행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승강기 정기 · 자체검 사대행, 자체검사원 직무 · 양성교육 -한국보호구협회 :우량보호구 개발보급 및 품 질향상도모 -한국산업안전학회 :산업안전관련 연구 · 조 사 -한국산업간호사협회 :산업간호에 관한 학술 연구 -중앙보건관리센터, 동서산업환경, 아주산업 환경 :작업환경측정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의식 고취를 위 한 계몽운동 전개 -안전환경연구원 :안전 ·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조사 · 연구 -한국산업안전장치제조업협회 :방호장치의 연구개발 및 보급 -한국산업구강보건원 :근로자 구강건강진단 사업

로 인한 손실규모가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극히 저조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상당부분이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금의 구성에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으로 전체 예산의 49.7%에 달하고 있다. 동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노 · 사의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촉진을 위한 유인제도”에서 살펴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기금 지출이 큰 몫(33.4%)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이다. 2000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재가 다발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사업, 화재 · 폭발 및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대형사고유발 가능한 설비의 사전 점검, 신종 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예방기법 개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고취 캠페인, 그리고 안전보건의 선진화를 위한 재해예방기술 정보 네트워크(KISCO-NET) 등이다. 2000년 지출예산 중에 산업재해예방기금을 다른 공공자금의 예탁에 활용하는 것과 지출예산의 14.9%를 여유자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활용의 극대화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4. 종합적 분석과 개선방향

가. 집행기관의 구성과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집행체제의 합리적 재구성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은 실로 복잡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장의 안전 · 보건 문제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60여개에 이르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에는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수개 부처 및 관련 산하기관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각기 소관분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련된 지도·감독·허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이들 기관간의 중복 및 다층적인 지도·감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을 관장하는 행정위원회에서 논의·검토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가시적으로 실현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내세워 통합에 합의 이끌어내는 데 난색을 보이기 때문으로, 이는 결국 각 기관의 존립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통합법의 제정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체계화·통일화·표준화 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안전보건기준의 표준화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표 2〉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항목	수 입				구분 연도 항목	지 출			
	총계	'98	'99	2000		총계	'98	'99	2000
총 계	787,153 (100%)	257,989	258,718	270,446	총 계	787,153	257,989	258,718	270,446
산업재해 보상보험 기금전입금	256,959 (32.6)	95,175	80,037	81,717	한국산업 안전공단 출연금	262,525 (33.4)	68,838	91,115	101,572
일반회계 전입금	20,644 (2.6)	7,548	6,548	6,548	산재예방 시설용자금	391,238 (49.7)	182,143	94,383	114,712
이자수입	75,772 (9.6)	24,167	22,179	29,426	산업재해 예방지도	4,324 (0.6)	1,613	1,208	1,503
이월금	184,369 (23.5)	9,192	96,257	78,920	여유자금	117,855 (14.9)	5,000	70,636	42,219
용 자 회수금	152,701 (19.4)	25,235	53,633	73,833	공공자금 기탁	10,000 (1.3)	-	-	10,000
기 타 수입금	96,738 (12.3)	96,672	64	2	기관관리	285 ⊖	119	78	88
					전산관리	919 ⊖	276	297	346
					국고잔액	7 ⊖	-	1	6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기금운영 현황자료, 1999~2001

통합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사업장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총괄 부처 및 주관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둘째, 총괄부처에는 관련부처간의 정책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셋째,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표준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제·개정을 심의하는 기구를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관기관에 설치토록 하고, 넷째,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효율적인 집행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노동청과 지방사무소간의 불분명한 업무분담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중간매개 집행기관으로서 지방노동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지방노동청과 지방사무소간의 산업안전보건집행체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권한 배분의 방안으로 노동부 본부는 지방노동청과 지방사무소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과 청 단위 사업평가에 그치고, 지방노동청은 청 관내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지방노동청 단위의 사업계획 및 지도·감독권한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노동청은 다수의 사망 사고나 중대산업사고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및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화학·조선 등 재해 취약산업분야에 대해서 청 단위의 전문감독인력을 편성,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지방노동청에 대한 활동예산과 인력의 증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② 재해예방 관련기관별 역할 재정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노동부 이외에 산하의 수개 기관이 중간매개집단(Intermediary Group)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재해감소의 정책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간의 수평적인 역할 구분의 명확화와 더불어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간의 불분명한 권한배분과 집행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과 사업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집중됨에 따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육성·발전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의 저변확대가 한계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간의 역할 구분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집행기능은 모두 노동부에서 전담 및 일원화하도록 하고, 반면에 기술적인 지도·지원 기능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부여토록 함으로써 감독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분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감독기능과 서비스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능상의 혼란과 사업장과의 유착관계 등을 단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측면에서도 행정인력의 대폭적인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집행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예방 서비스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독·과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시장경제의 효

울성이 필요한 안전경영 인증분야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보건진단분야 등은 보다 과감히 시장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술의 개발과 지원·교육·검사·검정 등 확인기능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업재해예방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역할 구분안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다.

③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및 증대방안강구

산업재해예방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운영방안으로 지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이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동기금의 조성은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의한 출연금과 극히 미비한 수준의 정부 일반회계에 의한 출연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그리고 2001년 말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산업재해예방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통합되게 되었다.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의 통합시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상대적 위축 또는 경시에 대한 우려는 “기금 지출예산의 5% 이상을 산업재해예방예산으로 편성하고, 정부에서 기금 지출예산의 3% 이내의 산업재해예방 재원을 출연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최소한 종전과 같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부담규모를 감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극히 미비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정부 일반회계에 의한 기금 출연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이월금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금의 소극적인 운용

<표 3> 재해예방관련기관별 역할 구분 방안

기관명	역할 분담 방안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조정 • 사업장 감독(산업안전보건기준 집행) - 각종 감독시 공단지원 요청을 기술적 사항으로 최소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확인감독 실시 • 공단 및 민간단체 지도·지원 및 평가
한국산업안전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교육 등 서비스적 업무 - 전문분야 재해예방 기술지원 -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과 관련된 업무 - 안전·보건경영 평가기법 개발·보급 - 산재예방 전문교육, 교육기법·자료개발, 홍보 등 • 정부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분석업무 - 산업안전보건연구 및 기술기준개발·보급 - 산업역학조사 등 직업병 원인규명, 진단 및 예방 사업 -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공정성이 요구되는 확인업무
민간재해예방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성을 크게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자율성·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대행,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기술지도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 - 무재해운동, 안전문화운동, 안전경영인증 - 일반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 자료 출판·보급 등

과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미흡에 따른 사업 부진이 그 원인으로 기금의 적극적 운용과 활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매우 필요하다.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예방 관련 예산의 운영을 보다 적극화하여 불용·이월되는 예산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발생 변화추이에 의하여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산업재해율이 1% 이하의 수준까지 꾸준히 줄어들어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로 역전하는 현상이 발현하고 있음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성과제도의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을 통한 산업재해감소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집행기관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첫째, 여러 부처에서 제 각기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체계화·통일화·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체계의 마련과 정책집행기관을 통합하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방사무소,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하 중간매개집단(Intermediary Group) 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집행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그 동안 산업재해예방의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성과에 비하여 미흡했던 정부의 예산출연이